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651
----------	------

제출일자 : 2025. 3. 21
제출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달성군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적정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나. 위탁교육훈련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규정(안 제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 별표2(※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5. 2. 6. ~ 2. 26.)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반납액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

1. 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2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육훈련에서 탈락한 경우
3. 제33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에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
4. 제34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 본인이 그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반납액의 산정기준표(제35조 관련)

구분	기준	반납액
1. 제35조제1호·제3호 해당자	소요경비	전액
2. 제35조제2호 해당자	소요경비	$\times \frac{1}{2}$
3. 제35조제4호 해당자	소요경비	$\times \frac{\text{의무복무월수} - \text{근무월수}}{\text{의무복무월수}}$

비고

- 가. 의무복무월수 및 근무월수의 계산에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 나. 국외훈련을 위하여 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반납고지서 발급일의 현찰매도 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다. 제2호 해당자가 다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추가반납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text{추가반납액} = \text{소요경비} \times \frac{1}{2} \times \frac{\text{의무복무월수} - \text{근무월수}}{\text{의무복무월수}}$$